

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(제7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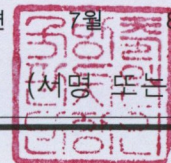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번호	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	수량	②직접 구매여부	③제외 사유	④비고
1	학습관리(LCMS)솔루션	1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2	3D콘텐츠생성 솔루션	1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3	DB암호화	1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4	서버보안	3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5	백업SW	3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6	관제SW	3	직접구매 () 제 외 (✓)	2개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	

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.

국방출판지원단장

2026년 7월 8일
(서명 또는 인)



유의사항

1. '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'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
 2. '②직접구매 계획여부'는 공개경쟁입찰,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(√),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(√)(제외사유 명시 필요) 표기
 3. '③제외사유'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
 4. '④비고'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,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
- ※ 제8조제3항에서 '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'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
- ※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"상호협약계약서", "조정사항 이행 약속서", "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" 제출

8급군무원/선가영/2026-07-07 13:59